

제 221 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 2 차 본 회 의  
2023.04.28.(금) 10:0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보고 순서

①	심사대상 및 경과	2
	가. 심사대상	2
	나. 심사경과	2
②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3
	가.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3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	3
	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3
③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	4
	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4
	나.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	4
	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	5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	8
④	주요 검토사항	10
⑤	제속비 사업	11
⑥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28일(금)  
제2차 본회의

## 1] 심사대상 및 경과

### 가. 심사대상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나.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4월 6일, 화성시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 2023. 4. 19.(수)[1일간]
  - 기획행정위원회 외 3개 위원회 - 2023. 4. 20.(목) ~ 4. 24.(월)[3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23. 4. 24.(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3. 4. 25.)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3. 4. 26.)
    -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3. 4. 27.)
    -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 계수조정 및 의결

## ㉒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 가.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

#### ①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재정법 제45조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 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 고물가·고금리·부동산 침체라는 복합경제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연내 집행 불가 사업 재원을 재조정하고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③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

#### 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3조 1,232억원보다 1,464억 원이 증가한  
3조 2,695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표-1. 총괄표〉

(단위: 억원, %)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조 2,695	3조 1,232	1,463	4.69
일반회계	2조 8,797	2조 7,848	949	3.41
특별회계	3,898	3,384	514	15.2
공기업	3,186	2,765	421	15.21
기 타	713	619	94	15.13

#### 나.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

-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 ▶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 639억원 감액
  - ▶ 위탁비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53억원 증액
  - ▶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138억원 증액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205억원 증액
  - ▶ 국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수입 3억원 증액
  - ▶ 2022년도 초과세입 따른 순세계잉여금 1,089억원을 증액 편성

〈표-2.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단위:억원, %)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조 8,797	2조 7,848	949	3.41
지방세 수입	1조 4,759	1조 5,398	△639	△4.15
세 외 수 입	1,763	1,610	153	9.49
경상적세외수입	1,164	1,121	43	3.84
임시적세외수입	431	344	87	25.3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9	146	23	15.48
지방교부세	222	100	122	122.36
조정교부금등	2,197	2,181	16	0.75
보조금	8,764	8,559	205	2.39
국고보조금	6,600	6,514	86	1.32
시·도비보조금	2,163	2,045	118	5.8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92	0	1,092	순증

## 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

### ○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 ▶ 자체사업 551억원, 보조사업 398억원을 증액하여 총 949억원 증액 편성
- ▶ (자체사업) 중고등학교 입학생 체육복비 지원 등 447개 사업 1,096억원 증액,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등 76개 사업 545억원 감액 편성
- ▶ (보조사업) 비료 가격안정 지원 등 197개 사업 492억원 증액,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86개 사업 94억원 감액 편성

<표-3. 일반회계 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억원, %)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조 8,797	2조 7,848	949	3.41
일반공공행정	1,463	1,425	38	2.65
공공질서및안전	351	331	20	5.98
교육	578	508	70	13.78
문화및관광	2,086	2,095	△9	△0.43
환경	2,131	2,069	62	3
사회복지	1조 522	1조 251	271	2.64
보건	670	674	△4	△0.55
농림해양수산	3,114	2,977	137	4.5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22	787	35	4.47
교통및물류	3,694	3,335	359	10.75
국토및지역개발	387	359	28	7.6
예비비	322	395	△73	△18.61
기타	2,660	2,641	19	0.69

〈표-4.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성질별)〉

(단위:억원, %)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조 8,797	2조 7,848	949	3.41
인건비	1,996	1,986	10	0.47
물건비	1,706	1,652	54	3.3
경상이전	1조 7,928	1조 7,588	340	1.93
자본지출	6,448	5,852	596	10.17
내부거래	394	373	21	5.45
예비비및기타	326	396	△70	△17.58

〈표-5.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위원회)〉

(단위:억원, %)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조 8,797	2조 7,848	949	3.41
의회운영위원회	76	67	9	12.8
기획행정위원회	4,775	4,723	52	1.1
경제환경위원회	4,958	4,792	166	3.5
교육복지위원회	1조 3,556	1조 3,230	326	2.5
도시건설위원회	5,433	5,035	398	7.9



##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

### ○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 ▶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51억원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13억원 등  
총 294억원을 증액 편성함.

###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 ▶ 시설투자 적립금 67억원
- ▶ 공평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0억원 등  
총 127억원을 증액 편성함.

### ○ 기타 특별회계는

- ▶ 화성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6억원 감액
- ▶ 교통사업 특별회계 73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1억 증액 등  
총 99억원을 증액 편성함.

〈표-6.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단위:억원, %)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898	3,384	514	15.2
세 외 수 입	2,271	2,213	58	2.6
경상적세외수입	1,858	1,857	1	0.05
임시적세외수입	124	120	4	3.2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8	235	53	22.44
보조금	343	311	32	10.27
국고보조금	276	266	10	3.8
시·도비보조금	66	44	22	49.1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85	860	425	49.38
보전수입 등	1,024	621	403	64.9
내부거래	261	239	22	9.14

〈표-7. 특별회계 세출총괄표〉

(단위:억원, %)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898	3,384	514	15.2
공기업특별회계	3,186	2,765	421	15.21
상수도사업	1,703	1,410	293	20.83
하수도공기업	1,482	1,355	127	9.37
기타특별회계	713	619	94	15.13
공공폐수처리시설	60	60	0	0
폐기물처리시설	2	0.2	2	1,005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6	5	1	17.16
화성함백산추모공원	123	129	△6	△4.40
교통사업	316	242	74	30.33
주민소득지원사업	36	35	1	4.38
대지보상사업	3	3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6.8	16.6	0	1.71
의료급여기금	43	43	0	0.02
도시재생	86	76	10	13.09
도시철도사업	21	10	11	110.53

〈표-8. 특별회계 세출총괄표(위원회)〉

(단위:억원, %)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898	3,384	514	15.2
의회운영위원회	-	-	-	-
기획행정위원회	-	-	-	-
경제환경위원회	3,307	2,881	426	14.8
교육복지위원회	166	172	△6	△3.3
도시건설위원회	426	331	95	28.5

## 4 주요 검토사항

### ○ 신규/증액사업 현황(10억원 이상)

- ▶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자체사업 중 10억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6건에 372억원으로 예산증액의 타당성, 집행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집행부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임.

### < 10억원 이상 신규/증액 사업 현황 >

※ 국·도비 사업 및 인건비 제외

(단위:천원)

연번	실과명	사업명	제1회 추경예산안	본예산	증액
	합 계	총 14개 부서, 16건	50,487,747	13,276,080	37,211,667
1	동탄 교통건설과	조명식 도로표지병 설치	1,000,000	0	1,000,000
2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출연금)	3,500,000	2,500,000	1,000,000
3	기업지원과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70,000	0	1,170,000
4	자원순환과	노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RFID) 교체	3,770,000	0	3,770,000
5	관광진흥과	고령산 해상공원 조성	2,500,000	0	2,500,000
6	평생교육과	화성시민대학 추가 조성	4,900,000	200,000	4,700,000
7	체육진흥과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1,173,000	0	1,173,000
8	복지정책과	보훈명예수당	8,781,810	6,264,000	2,517,810

연번	실과명	사 업 명	제1회 추경예산안	본예산	증액
9	영유아보육과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1,531,216	279,600	1,251,616
10	아동친화과	출산지원금	9,576,000	655,000	8,921,000
11	도로관리과	우정 중로 1-2호선 외 2개소 개선공사	1,000,000	0	1,000,000
12	도로관리과	시도10호선 하길지하차도 재포장 공사	1,000,000	0	1,000,000
13	버스혁신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3,345,721	700,000	2,645,721
14	버스혁신과	동탄2광역교통특별대책 운수업계 보조금	2,240,000	0	2,240,000
15	도시재생과	송산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개선공사	1,200,000	77,480	1,122,520
16	산림휴양과	도로변 풀베기	3,800,000	2,600,000	1,200,000

## 5] 계속비 사업

-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2023년도 계속비사업은 세입·세출 예산안 p.193 참조.

## 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1개의 기금을 신설하고 3개 기금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 여유자금 예탁 등을 계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신설 기금 : 고향사랑기금
- 변경 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2개 기금
- 이에 따라 현재 화성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16개로,
  - ▶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326억 원임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세부내역은 붙임 심사결과 참조)

#### ○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나. 소수의견의 요지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가결안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위원은 없었음.
- 위원별 세부발언내역은 화성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hscity.net/>)의 『회의록검색』 메뉴 열람, 참조.

붙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부. 끝.

[붙임]

2023. 04. 2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역**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 수정의결**

가. 세 입 : 원안가결

나. 세 출 : 수정가결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액	감액	증액	의결액	비고
합 계	3,269,536,855	175,000	-	3,269,361,855	
일반회계	2,879,705,192	175,000	-	2,879,530,192	
특별회계	389,831,663	-	-	389,831,663	

※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삭감조서 참조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내역 : 원안의결**

가. 수 입 : 원안가결

나. 지 출 : 원안가결